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참고자료**	힘내라 대한민국

2020년 7월 2일 00시(자정, 관보게재 일시)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20. 7. 1(수)	담당부서	원전산업정책과
담당과장	서기웅 과장(044-203-5320)	담 당 자	한진영 사무관(044-203-5321)

월성1호기 조기폐쇄,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사업자 비용보전 추진

-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법적근거 마련 ('20.7.2. 입법예고)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**에너지전환 로드맵**(국무회의 의결, '17.10월)에서 밝힌 대로 **월성1호기 조기폐쇄,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한 비용보전***을 위해,

* "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,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 추진"

○ **한국수력원자력(주) 등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마련**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'20.7.2일 입법 예고함

□ 이번에 입법예고된 **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**은

○ **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·의결한 에너지 정책의 이행**과 관련하여, **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**에 대해,

- **전력산업기반기금**을 **사용하여 보전**할 수 있도록 하는 **근거 규정을 신설**하는 것임 (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8호 신설)

제34조(기금의 사용) 법 제49조제1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(신설) 국무회의에서 심의·의결된 에너지정책의 이행과 관련하여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보전을 위한 사업

□ **정부**는 2017.10월 **에너지전환로드맵**(국무회의 의결)을 통해 "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하여, **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**에 대해서는 **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하여 보전**하되, **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"**이라고 밝힌 바 있음

○ 이후, 20대 국회에서 **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***되어 비용보전 관련 논의가 **조속히 이루어질** 것으로 기대하였으나, **여·야 간 이견**으로 입법논의가 지연된 상태에서 제20대 국회의 종료로 **법안이 자동 폐기**되었음

* ①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(이철우의원, '18.5.2)
②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(이언주의원, '18.11.8)
③ 원자력발전소 건설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(강석호의원, '19.11.21)

○ 반면, 월성1호기 조기폐쇄(18.6), 천지1·2 및 신규1·2 사업종결('18.6) 등 **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 조치***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**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 마련을 더 미룰 수 없어**,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선 금번 **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**하게 된 것임

* 월성1호기 조기폐쇄('18.6), 한수원의 영덕(신규1,2)·삼척(천지1,2) 사업 종결('18.6월), 삼척 예정구역 해제('19.6.) 등

○ 최근 "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"(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, '20.6.3)이 발의되는 등 **21대 국회에서도 비용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**으로 예상됨

○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의 관련 **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**할 계획으로,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된 사업자의 비용보전 방안이 **논의**될 수 있기를 기대함

□ 금일 입법 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**8.11(화)까지 40일간 의견청취**를 거쳐 **최종안을 확정할 계획**이며,

○ 시행령 개정 이후 **비용보전 범위①, 비용보전 절차②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고시를 제정**하여, 정부정책 결정 등과 관련하여 **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 보전**할 계획임

* ① 예상 비용보전 범위 (예시)
- 월성1호기 조기폐쇄 : 계속운전 목적 투자설비 잔존가치, 계속운전 가산금 등
-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: 부지매입 비용, 시설공사 및 용역비용, 인건비 등

* ② 예상 비용보전 절차 (예시)
- 한수원의 신청 (한수원 → 산업부) → 비용산정위원회 (회계사·변호사 등으로 구성) 검토 → 비용보전 (산업부 → 한수원)

□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"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**비용보전의 법적 근거**가 **마련**되어 향후 **에너지전환정책**이 보다 **원활히 추진**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."고 밝힘 <끝>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한진영 사무관(☎ 044-203-532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